예 산 총 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036,805,037	2,721,510,134
일반회계	10,703,014,812	2,140,602,962
특별회계	4,333,790,225	580,907,172
공기업특별회계	2,226,640,095	370, 192, 159
수도사업특별회계	434,429,095	43,442,91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6,929,507	31,692,951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475,281,493	295,056,299
기타특별회계	2,107,150,130	210,715,01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0,555,514	3,055,551
소방특별회계	435,401,997	43,540,2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7,835,792	77,783,579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22,202,000	2,220,200
수질개선특별회계	6,973,904	697,390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2,870,991	287,099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934,081	293,408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005,341	900,534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543,098	254,31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848,877	6,884,88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1,261,174	4, 126, 11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76,387,837	47,638,784
도시개발특별회계	24, 169,006	2,416,901
지하도상가특별회계	8,281,602	828,16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97,878,916	19,787,892

-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98,356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12,0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 상환금(차입금, 예수금)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